

일본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대책⁽²⁾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유형별로 본 어협의 마리나·피셔리너 대응과 과제

어협의 마리나·피셔리너에 대한 대응은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이것은 당해지역의 어업 조건이나 마리나·피셔리너 설립의 계기,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방법 등이 가지각색인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협의 마리나·피셔리너 대응(관리·운영)의 합리화와 그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책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에 의거하여 자기 지역의 특성을 인식하고 각기의 방침을 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협의 마리나·피셔리너 대응의 사례조사에서 어협의 마리나·피셔리너 대응과 과제는 아래와 같다.

a. 어협 관리형

a-1. 어협 직접관리형

① 업무내용의 명확화
어협이 어항관리자로부터 어항시설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어항에 대하여는 어항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어항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동시에 민사상의 계약으로 행하는 요트·보트 등의 관리·보관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여 집행할 것(특히 어항관리조례에 의거한 어항시설의 이용료와 민사상의 계약에 의거하는 서비스 등의 대가로서 비용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징수할 것), 그리고 이 사업을 이용사업의 일환으로서 어협업무에

자리매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② 부대설비의 정비

계류 부이(buoy), 부잔교, 텐더(tender), 관리사무소 등 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을 서비스·수요에 따라 수시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과의 제휴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주성이 유지되는 형태로 진행시켜야 한다.

③ 관리시스템의 확립

어협직원이 직무분장에 마리나·피셔리너 관리를 명기하고, 담당직원 의지도 서비스업무 종사자의 직무 향상(교육·훈련)과 업무의 매뉴얼화를 도모할 것. 경우에는 따라서는 어협의 사업제휴에 의한 직원의 광역적인 배치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한다.

④ 마리나·피셔리너 부문회계의 독립

마리나·피셔리너 부문을 이용사업의 일환으로서 분할 처리하는 동시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그 수지를 명확히 하도록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⑤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의 협정 등의 체결

지역어업의 실태에 따라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 수면이용, 항행의 안전, 사고처리대책 등에 대하여 협정 등을 체결하고, 어업조업이나 수면 이용질서의 유지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에 필요하다면 행정 등의 지도를 받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또 상호교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것.

a-2. 조합원 집단관리형

① 관리주체의 명확화

공동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예가 많으나 출자의 그 책임부담 관계 및 책임책임자와 그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법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수면이용범위 등의 명문화

지선 수면의 관행적 이용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어협관리의 어업권어장의 수면이용에 관하여 어협과 이용 가능한 수면의 범위 등을 명문화 해 둘 것.

③ 부대설비의 정비

계류부이, 부간교, 관리사무소 등의 정비에 대하여는 어협이나 어항관리자, 해안관리자 등 수역관리자와의 협의하에 진행시킬 것. 또 기업과의 업무제휴에 있어서는 어협과 협력하여 지구의 자주성 유지에 노력할 것.

④ 관리시스템의 확립

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의 성명,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현장담당자의 직능 향상을 도모할 것.

⑤ 회계시스템의 확립

요금체계, 경영수지의 명확화, 재산관리, 이익배분 등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격없는 사단(임의조합)」에서 법인격을 갖는 기업회계로 전환을 꾀할 것.

⑥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 협정 등을 체결

a-1에 준한다.

b. 어협자산 활용형

b-1. 부동산 대여형

① 어협주도의 경영주체의 형성 및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주체와의 관계명시

마리나·피셔리너 용지(어협의 소유지) 등의 대여에 있어서는 어업이나 지역에 이해가 있는 주체가 선택되어야 하고, 어협과의 협력업무를 포함한 계약서를 교환하여 계약관계의 명확화를 꾀하고 또한 어협의

지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합리화

임대료의 어협회계 편입, 처분방법 등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의 협정체결

a-1에 준한다.

④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주체의 역할명시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자가 그 경영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어업자의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행사의 기획, 실시 등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협정 등에 의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b-2. 이용료 등 징수형

①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주체와의 관계명시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주체와의 계약관계의 명확화를 도모할 것. 거기서 어협의 협력 항목도 명시하고 어협의 지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회계처리의 합리화

어협회계에의 편입, 회계처리법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의 협정 등의 체결

a-1에 준한다.

④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주체의 역할 명시

b-1에 준한다.

c. 제3섹터형

c-1. 제3섹터 어협참가형

① 어협주도의 관리주체의 형성

출자비율은 어협관계, 자치단체, 민간기업과도 동등하게 근접시키고 경영책임자로는 어협관계자를 앉히도록 노력한다.

② 마리나·피셔리너와의 협정체결

a-1에 준한다.

③ 제3섹터의 역할 분담

마리나·피셔리너 경영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채산화보를 도모하면서 그 지방에 대한 이익환원에 노력하는 한편 어업관계자와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행사는 기획, 실시 등 지역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협정을 통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면이용조정 등에 관한 협의회의 설치

마리나·피셔리너 운영·수면이용조정 등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관리자와 어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체제를 정리할 것. 또 수면이용조정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해면이용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c-2. 제3섹터 어협비 참가형

① 자치단체 주도의 관리주체

형성

제3섹터의 운영은 어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입장에 있는지 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체제를 설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② 제3섹터와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의 협정체결

원활한 어업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섹터나 자치체와의 사이에 각종 협정을 체결하든가, 약속의 확인을 실시해 둘 필요가 있다. 기타는 A-1에 준한다.

③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체 제를 정비

수시로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자의 어업자가 수면이용조정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 또 필요에 따라 해면이용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지역활성화에의 협력의 확인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자에 대하여 어업관계자와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행사는 기획, 실시 등 지역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협정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d. 관계협정 체결형

d-1. 제3섹터 마리나·피셔리너 협정형

c-2에 준한다.

d-2. 민영(民營)마리나·피셔리너 협정형

①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주체, 이용자와의 협정체결

원활한 어업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주체, 이용자 단체와 조업·어장의 안전확보, 사고처리대책, 안전교육 등의 각종 협정의 체결이나 결정의 확인을 실시해 둘 필요가 있다.

② 수면이용,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협의체제의 정비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자와 어업자가 수면이용조정이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 또 필요에 따라 해면이용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 지역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의 확인

마리나·피셔리너 관리자에 대하여 어업관계자와 마리나·피셔리너 이용자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행사는 기획, 실시 등 지역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협정 등을 통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청장관이 도도부현 지사 앞으로 보낸 통첩은 다음과 같다.

‘어항에서의 어선이외의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어항법(1950년 법률 제137

호) 제정이래 40여년이 경과하고, 이 사이 200해리체제로의 이행, 공해어장의 국제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일본 어업을 둘러싼 정세는 크게 변화하여 왔다. 한편 근년에 있어서 국민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한 해양성레크리에이션의 보급에 수반하여 어항의 이용상황에도 어항정비시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유어선, 요트, 모터보트등 (이하「플레저 보트 등」이라 한다) 어선이외의 선박에 의한 어항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무질서한 방치·계류 등으로 인한 어업과의 트러블이 문제가 되어 그 조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플레저 보트 등의 수용에 대하여 당청에서는 1987년도부터 어선과 플레저보트 등과 어항에 있어서의 이용을 조정하는 어항이용 조정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하게 어항의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1992년도에 모범어항관리규정예를 개정하여 어항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금번에 다시 기존 어항시설에 있어서 어항관리자가 어선의 어항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양성레크리에이션 시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망에 대응하여 下記에 따라 플레저보트 등 어선이외의 선박에 의한 어항이

용에 대응하기로 하였으므로 양지하시와 적정한 어항이용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귀관한 어항관리자, 관계어협 등에도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記〉

‘어항에서의 어선 이외의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어항은 어업근거지가 되는 수역과 육역 및 시설의 종합체인데 통상은 어선의 이용이 일반선박의 이용을 상회하는 것이나 제도상은 어항본래의 기능외에 어항의 이용상 또는 어항의 보전상의 규제 등 타목적의 이용도 상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는 어선의 수에 대하여 어항의 수용능력이 불충분하여 어선이외의 선박을 수용하는 일이 사실상 곤난한 상황이었으나, 근년에는 수차례 걸친 어항정비계획의 실시에 의하여 어항수용능력이 향상하는 한편 수산업을 둘러싼 제정세의 변화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어선이외의 선박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 어항도 눈에 띄게 되는 실정이다.

한편 근년도시근교를 중심으로 플레저보트 등에 의한 어항이용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어항본래의 목적을 조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어항에 있어서는 공공시설로서 이를 수요에 부응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항관리자는 이들 어선이외의 선박의 어항이용의 수요와 어항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플레저보트 등에 의한 어항이용을 수용해 감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업과 해양성레크리에이션과의 조화있는 발전 및 활력있는 어촌사회의 창조에 이바지하도록 운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금후 플레저보트 등의 무질서한 방치·계류 등을 해소하고 어업과의 공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하의 구체적인 방책을 확립하여 어업과 해양성레크리에이션과의 어항이용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1. 대상어항

어항관리자가 플레저보트 등에 의한 어항이용의 수요가 높고 또한 어업정세의 변화, 어한기의 형편 등에 따라 어항시설에 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항으로 한다.

2. 수용시설

어항관리자는 기존 어항시설 중 양륙안벽, 항로 등의 어업생산활동상 중심이 되어있는 기본적인 시설이외의 것(호안전면 및 방파제의 배후 등의 계류 가능한 정온역 등을 포함)으로서 플레저보트 등의 이

1용(비지터이용을 포함)이 가능한 시설을 수용시설로 하여 지정한다.

또 박지이외의 어항구역내의 수역중 플레저보트 등의 계류 가능한 수역에 있어서는 어항 정비계획등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어항관리자가 관리하는 플레저보트 등의 전용박지 를 설정한다.

또 수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계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요 절차를 거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3. 수용방법

어항관리자는 그 지방 어선 및 그 지방외 이용어선의 연간 의 어업종류별, 계층별 등의 어항이용형태를 파악한 뒤 어선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플레저보트 등의 적절한 이용척수를 설정하는 동시에 적정한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어항시설의 이용료를 정수한다. 또 플레저보트 등에 관련되는 어항 시설이용자는 어항이용에 있어서 어항관리조례에 정해진 계출수리나 요금징수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항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관리수탁자로서 그 지방 어협 등에 위탁을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4. 어항감시등

어항관리자가 스스로 관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항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순회, 긴급시의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그 지방 어협 등에 위탁하는 동시에 감시원 등을 배치하고 항상 적정한 어항의 관리를 꾀한다. 또 어항의 질서있고 원활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벽·용지 등에 대한 안내표지·안내판의 설치 등 홍보계몽활동의 강화를 꾀한다.

5. 어항이용촉진협의회의 설치

어항관리자는 어선이외의 선박에 의한 어항이용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어협, 이용자, 공익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항이용촉진협의회」를 별지에 의하여 설치하고 어항의 관리운영, 이용시간, 항내에서의 범주 구역, 표지의 게시 등 준수사항을 설정하는 등 어항이용에 있어서의 규제화를 추진 한다.

〈별지〉

「어항이용촉진협의회 설치 규정」(예)

(목적)

제1 어항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이용 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직무)

제2 협의회는 어항관리자의 자문에 응하고 어항이용에 있어서의 어업자와 기타 일반 이용자사이의 트러블을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어항이용을 위한 룰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검토를 하는 동시에 어항관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직)

제3

(1)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조직한다.

(2) 회장은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된다.

(3) 위원은 어항관리자가 선임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충당 한다.

(가) 당해어항을 근거지로 하는 어업협동조합의 대표자

(나) 당해어항을 이용하여 유 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외의 자

(다) 당해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상기 (가), (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당해지구의 공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마) 당해지구에 있어서 어항의 이용에 관하여 어항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등)

제4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험 위원은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후임의 위원이 취임할 때 까지의 기간은 아직 그 직무를 행한다.

(회의)

제5

(1) 협의회는 정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2)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협의회의 소집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집착)

제6 협의회는 본규정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水產廳 漁政部協同組合課長 · 振興部沿岸課長 · 漁港部計劃課長이 都道府縣漁港關係主務部長 앞으로 보낸 통첩은 다음과 같다.

어항에서의 어선이외의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는 오늘 날짜로 별도 수산청장관으로부터 통첩된바 있으나 금후의 어항 관리에 있어서는 下記 사항에 유의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記〉

1. 당해조치는 기존 어항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어업 근거지의 기능으로 필요한 것을 보조목적으로 하고있고, 또 지방자치법상에도 동일 목적의 공공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어업생산활동을 조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용기준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시설의 이용이므로 이용자의 결정에 대하여는 공모추첨에 따르기로 하고, 공평한 이용이 행해지도록 배려하기 바람. 또 어항이용의 공모추첨을 할 때에는 어항이 어선의 이용을 제일의적인 목적으로 한 시설임을 주지시켜 주기 바람.

3. 어선이외의 선박에 의한 어항이용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는 어업자와 어업자이외의 어항이용자와의 대화의 장을 설정할뿐만 아니라 어업자이외의 어항이용자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므로, 이용자의 규칙의 주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태도의 계발, 어업조정규칙, 어장이용협정제도 등의 주지 등 어업과 조화가 취해진 해면 이용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작용하시기 바람.

4. 대상어항의 설정에 있어

서는 당해어항의 이용실태를 충분히 고려한 뒤, 원활한 어항이용의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사전에 그 지방 관계 어협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조정하시기 바람.

5. 어협 등이 관리수탁자로서 어항시설의 이용료를 징수 할 경우와는 별도로 플레저보트 등의 관리, 보관 등의 서비스 등의 대가로서 플레저보트 등의 소유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고 있는 케이스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어항시설 이용료의 징수라고 오해되는 등 그 내용이 불명료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어협 등에 의한 플레저보트의 관리, 보관 등의 서비스가 민사상의 계약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항 관리자로서 이들 행위에 대한 직접판여는 곤난하나 어항이용의 규정화의 일환으로서 어협 등에서 서비스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구하는 동시에 계약내용, 요금의 개시 등의 명확화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6. 1993년 8월 4일자로 「사단법인피셔리너협회」의 설립이 인가된바 있다. 이 협회는 어항시설이나 해면이용에 있어서의 어업과 해양성레크리에이션과의 조화 등 본 통첩의 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이 협회의 활용도 시도하기 바람. ▲